

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(제1차 교육위원회) 2022. 3. 17.(목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수 석 전 문 위 원

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임동현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O 발의일자: 2022년 3월 8일

O 회부일자: 2022년 3월 10일

3. 제안이유

O 다양한 진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로활동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,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기 위해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진로활동실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8조)
-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11조 ~ 안 제13조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이유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 내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 전용 공간으로 활용할 진로활동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, 충청북도진로교육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 ○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단위 학교별로 학생들에게 최신의 진로 · 진학 정보제공과 학생 맞춤형 진로 · 진학 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진로교육 전용 환경조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8조의 진로활동실 설치 규정은 각 학교에서 진로교육, 진로탐색을 위한 각종 검사 및 상담, 진로 정보 제공 등 진로 관련 교육활동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전용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내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의 체계화와 전문성 강화, 실효성 있는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진로활동실 설치 시 학교 내 공간 확보와 투입되는 시설 등학교별 특성에 맞는 공간 확보와 구성, 진로활동실 활용 계획 수립 등에 따라 진로활동실 설치 유형(신축 또는 환경개선)과 예산집행이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사업추진 계획과 체계적인 시행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, 진로활동실이 미설치된 24개학교의 추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산확보와적극적인 시행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충청북도 내 진로활동실 설치 현황(2022. 3. 기준)

(단위:개)

구분	진로활동실 설치	진로활동실	진로활동실 미설치
	대상학교 수	설치 학교 수	학교 수
중	126	111	16
고	84	75	8
소계	210	186	24

※ 자료제공: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혁신과(2022. 3.)

O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 충청북도진로교육협의회(도협의회)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, 개의(開議)하고를 개최하고로 변경하는 등 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한 것은 현행 조례에 따른 도협의회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을 준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다. 종합의견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 취지와 필요성 및 실효성이 인정되고, 개정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없고, 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및 집행부 협의 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.